



규정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TWP-A161
제정일자	2015. 04. 27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1/4

목 차

부칙
별첨

작성부서	사무처 서무과	제정일자	2015. 05.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사무처장	부총장	행정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161
		제정일자	2015. 04. 27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있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1.>

제2조(사용대상) ① 시설물은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수업,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② 외부단체나 기관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나 교육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조(범위) 시설물 중 사용 가능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9.08., 2024.12.11.>

1. 체육관 및 강당
2. 강의실과 각종 실험·실습실 및 부대시설
3. 기숙사
4. 운동장
5. 시설물 중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신설 2022.09.08.>

제4조(주관부서)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에서 주관한다.


제5조(신청 및 사용) ① 학생, 교직원, 외부단체 등에서 학교주관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상 사용되는 목적 이외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단체, 목적 및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9.08.><개정 2024.12.11.>

② 시설물 중 운동장을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4.12.11.>

제6조(허가조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대학 내 안전·질서체계 유지와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서면 형태로 허가조건을 명시하거나 시설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4.01.11.>

제7조(사용준수)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1. 사용 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2. 사용기간 및 시간준수
3. 안전 및 질서유지
4. 기타 우리 대학에서 지시한 사항

	규정	문서번호	TWP-A161	
		제정일자	2015. 04. 27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제8조(사용제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1. 이 대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3. 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시설물 사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5.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 및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재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신설 2024.01.11.><개정 2024.12.11.>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 설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대학교 주관에 의한 행사 사용과 시설물의 사용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01.11., 2024.12.11.>

② 사용료는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승인한 시설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초과 사용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 1]의 사용구분에 따라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구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신설 2024.01.11.>

④ 총장은 시설물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경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09.08., 2024.01.11.>

제12조(면책)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4.12.11.>

제13조(사용료 감면) 총장은 시설물 사용의 목적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1	
		제정일자	2015. 04. 27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06.03., 2022.09.08.>

시설물 대관요금 산출표

시설물명	사용구분		사용시
일반강의실	1일		300,000원
	4시간 이내		150,000원
실험실습실 (컴퓨터실습실)	1일		600,000원
	4시간 이내		400,000원
특수목적강의실	1일		800,000원
	4시간 이내		500,000원
회의실	1일		500,000원
	4시간 이내		300,000원
효암관 201호 대학본부 101호	1일		600,000원
	4시간 이내		400,000원
실내체육관	1일		800,000원
	4시간 이내		600,000원
기타일반실	1일		400,000원
	4시간 이내		200,000원
인문사회관 노천광장	1일		600,000원
	4시간 이내		400,000원
잔디운동장	축구경기	1시간	100,000원 (최저 2시간 사용)
		1일	1,000,000원
	행사	4시간 이내	500,000원
기숙사	일반	1박	20,000원
		2박 이후	15,000원
	학생(초,중,고)	1박	12,000원
		2박 이후	8,000원
분수공원	1일		500,000원
건물외부공간	1일		300,000원

※ 사용구분

1. 기숙사 1일 숙박 기준(13:00 ~ 익일 11:00)

- 사용료는 1박 1인 기준 금액임

2. 초과사용료 : 시설물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구간대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함.